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8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 개정, 2025.6.14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

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다목2)의 표 중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위생 용 품 시 험 · 검 사 기 관	이화학	메탄올, 비소,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아조염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재질 시험항목, 용출시험항목, 유해원소 용출량, 유해원소 함유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 물질, 바륨, 코발트, 구리, 셀레늄, 안티몬, 주석, 아연, 파라벤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강도, 모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
	미생물	대장균, 일반세균수, 진균수, 무균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